|  |  |  |
| --- | --- | --- |
|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  국무원 판공청 [2011]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할기구: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도 깊은 발전과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다양적인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자원의 최적화 배치, 기술진보 추진, 기업관리수준 제고 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을 질서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이하 ‘인수합병 안전심사’라 약함)제도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수합병 안전심사범위  (1) 인수합병 심사범위: 외국투자자가 국내 군수공업 및 군수공업 계열사,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명함과 아울러 외국투자자가 실제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①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하여 그 국내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할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 인수함과 아울러 그 자산을 운영하거나, 혹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④ 외국투자자가 직접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3) 외국투자자의 실제지배권 취득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주권을 지배하는 주주로 되거나 혹은 실제지배인으로 됨을 말하며, 이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① 외국투자자 및 주권을 지배하는 모회사, 주권을 지배하는 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보유한 지분총액이 50%이상일 경우  ② 한개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보유한 지분총액이 50%이상일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보유한 지분총액이 50%미만이나 그 보유 지분에 따라 행사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의 혹은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④기타의 국내기업의 경영결책,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지배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된 경우.  2. 인수합병 안전심사내용  (1)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에 필요한 국내제품 생산능력, 국내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을 포함하는 국방안전에 주는 영향  (2)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기본생활질서에 주는 영향  (4)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한 관건적인 기술연구개발능력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 안전심사업무 메커니즘  (1)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약함)제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인수합병안전심사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연석회의는 국무원의 지도하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책임지며, 외자의 인수합병에 연관된 업종과 영역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함께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3) 연석회의의 주요직책: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업무 중에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조율하며, 안전심사가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4. 인수합병 안전심사절차  (1)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인수합병 거래인 경우 상무부는 5일 근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2) 국무원 유관부문, 전국업계협회, 동업기업 및 상, 하류 기업이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무부를 통하여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진행할 데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연석회의가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연석회의는 상무부가 제출한 인사합병거래 안전심사에 대해 먼저 일반심사를 진행하며, 일반심사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인수합병거래 당사자는 연석회의의 안전심사업무를 협조하여 안전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일반심사는 서면 의견수렴방식을 취한다. 연석회의는 상무부가 제출한 인수합병거래 안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유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한다. 유관 부문은 서면 의견수렴 공문을 받은 후 20일 근무일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유관부문이 모두 인수합병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연석회의는 모든 서면의견의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아울러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유관부문에서 인수합병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의견을 접수한 5일 내에 특별심사절차를 가동한다. 특별심사절차를 가동한 후 연석회의는 인수합병거래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견에 결부시켜 인수합병거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의견이 기본적으로 일치할 경우 연석회의에서 심사의견을 내 놓는다. 의견상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석회의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연석회의는 특별심사절차를 가동한 날로부터 60일 근무일 내에 특별심사를 완료하거나 혹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의견은 연석회의에서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4) 인수합병 심사과정에 신청인은 상무부에 거래방안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거래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인수합병 안전심사의견은 상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줄 수 있는 경우 연석회의는 상무부와 기타 유관부문과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혹은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인수합병행위가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한다.  5. 기타 규정  (1) 유관부문과 단위는 대세관념을 수립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자 인수합병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신규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고정자산투자관리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심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국유자산의 변경과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국유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외국투자자의 경내금융기구 인수합병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의 인수합병은 본 통지의 규정을 참조 집행한다.  (6)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는 본 통지가 반포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1년 2월 3일 |  | **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  **审查制度的通知**  国办发 〔2011〕6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近年来，随着经济全球化的深入发展和我国对外开放的进一步扩大，外国投资者以并购方式进行的投资逐步增多，促进了我国利用外资方式多样化，在优化资源配置、推动技术进步、提高企业管理水平等方面发挥了积极作用。为引导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有序发展，维护国家安全，经国务院同意，现就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以下简称并购安全审查)制度有关事项通知如下：  一、并购安全审查范围  （一）并购安全审查的范围为：外国投资者并购境内军工及军工配套企业，重点、敏感军事设施周边企业，以及关系国防安全的其他单位；外国投资者并购境内关系国家安全的重要农产品、重要能源和资源、重要基础设施、重要运输服务、关键技术、重大装备制造等企业，且实际控制权可能被外国投资者取得。  （二）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是指下列情形：  1外国投资者购买境内非外商投资企业的股权或认购境内非外商投资企业增资，使该境内企业变更设立为外商投资企业。  2外国投资者购买境内外商投资企业中方股东的股权，或认购境内外商投资企业增资。  3外国投资者设立外商投资企业，并通过该外商投资企业协议购买境内企业资产并且运营该资产，或通过该外商投资企业购买境内企业股权。  4外国投资者直接购买境内企业资产，并以该资产投资设立外商投资企业运营该资产。  （三）外国投资者取得实际控制权，是指外国投资者通过并购成为境内企业的控股股东或实际控制人。包括下列情形：  1外国投资者及其控股母公司、控股子公司在并购后持有的股份总额在50%以上。  2数个外国投资者在并购后持有的股份总额合计在50%以上。  3外国投资者在并购后所持有的股份总额不足50%，但依其持有的股份所享有的表决权已足以对股东会或股东大会、董事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  4其他导致境内企业的经营决策、财务、人事、技术等实际控制权转移给外国投资者的情形。  二、并购安全审查内容  （一）并购交易对国防安全，包括对国防需要的国内产品生产能力、国内服务提供能力和有关设备设施的影响。  （二）并购交易对国家经济稳定运行的影响。  （三）并购交易对社会基本生活秩序的影响。  （四）并购交易对涉及国家安全关键技术研发能力的影响。  三、并购安全审查工作机制  （一）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制度，具体承担并购安全审查工作。  （二）联席会议在国务院领导下，由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根据外资并购所涉及的行业和领域，会同相关部门开展并购安全审查。  （三）联席会议的主要职责是：分析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对国家安全的影响；研究、协调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工作中的重大问题；对需要进行安全审查的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交易进行安全审查并作出决定。  四、并购安全审查程序  （一）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应按照本通知规定，由投资者向商务部提出申请。对属于安全审查范围内的并购交易，商务部应在5个工作日内提请联席会议进行审查。  （二）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国务院有关部门、全国性行业协会、同业企业及上下游企业认为需要进行并购安全审查的，可以通过商务部提出进行并购安全审查的建议。联席会议认为确有必要进行并购安全审查的，可以决定进行审查。  （三）联席会议对商务部提请安全审查的并购交易，首先进行一般性审查，对未能通过一般性审查的，进行特别审查。并购交易当事人应配合联席会议的安全审查工作，提供安全审查需要的材料、信息，接受有关询问。  一般性审查采取书面征求意见的方式进行。联席会议收到商务部提请安全审查的并购交易申请后，在5个工作日内，书面征求有关部门的意见。有关部门在收到书面征求意见函后，应在20个工作日内提出书面意见。如有关部门均认为并购交易不影响国家安全，则不再进行特别审查，由联席会议在收到全部书面意见后5个工作日内提出审查意见，并书面通知商务部。  如有部门认为并购交易可能对国家安全造成影响，联席会议应在收到书面意见后5个工作日内启动特别审查程序。启动特别审查程序后，联席会议组织对并购交易的安全评估，并结合评估意见对并购交易进行审查，意见基本一致的，由联席会议提出审查意见；存在重大分歧的，由联席会议报请国务院决定。联席会议自启动特别审查程序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特别审查，或报请国务院决定。审查意见由联席会议书面通知商务部。  （四）在并购安全审查过程中，申请人可向商务部申请修改交易方案或撤销并购交易。  （五）并购安全审查意见由商务部书面通知申请人。  （六）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行为对国家安全已经造成或可能造成重大影响的，联席会议应要求商务部会同有关部门终止当事人的交易，或采取转让相关股权、资产或其他有效措施，消除该并购行为对国家安全的影响。  五、其他规定  （一）有关部门和单位要树立全局观念，增强责任意识，保守国家秘密和商业秘密，提高工作效率，在扩大对外开放和提高利用外资水平的同时，推动外资并购健康发展，切实维护国家安全。  （二）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涉及新增固定资产投资的，按国家固定资产投资管理规定办理项目核准。  （三）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涉及国有产权变更的，按国家国有资产管理的有关规定办理。  （四）外国投资者并购境内金融机构的安全审查另行规定。  （五）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进行并购，参照本通知的规定执行。  （六）并购安全审查制度自本通知发布之日起30日后实施。  国务院办公厅  二○一一年二月三日 |